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

1. 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를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2. 제안이유

영상정보 반환 과정의 번거로움과 유출 등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기관에서 파기하도록 수정동의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p> <p>①·② (생략)</p> <p>③ 관계 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p>	<p>제25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판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p>